

공학교육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08. 8. 25.

제6차 개정 2024. 7. 30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부속 공학교육센터(이하“센터“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2.4.20.)

제2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공학교육인증 및 공학교육혁신 방향 설정을 위한 업무
2. 창의적인 공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
3. 공학교육 특성을 고려한 교수법 개발
4. 학생진로 및 학업이수계획 지도방안 개발
5. 프로그램 평가 및 교육과정 평가 등 평가방법 연구
6. 사이버 공학교육 시스템 개발 등 새로운 교육매체 전달수단 개발
7. 기타 공학교육인증과 관련된 사업

제2장 조직 (개정 2010.4.6)

제3조(조직·기능) (조 삭제 2010.4.6.)

제4조(조직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에는 프로그램별 PD(Program Director), 연구원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
④ PD는 공학교육인증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속한 전임교원 중에서 한명을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인증프로그램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
⑤ 센터에는 인증평가업무지원실, 교육과정개발실, 교육평가개발실, 연구·기획실을 둘 수 있다.

(조 신설 2010.4.6.)

제5조(직무) 센터의 각 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인증평가업무지원실 : 연구결과 배포, 인증유지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, 공학인증전산시스템 유지관리, 인증업무 지원, 학생 및 공학교육 발전을 위한 제반업무지원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개발실 :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설정, 교육과정 개발, 교과목 연구개발, 프로그램

- 운영자문, 초·중·고등학생 및 일반인에 대한 공학의 소개와 이해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
3. 교육평가개발실 :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평가, 강의평가, 졸업생평가, 교육과정평가 등의 평가방법론 연구, 평가 시행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
 4. 연구기획실 : 공학교육인증 및 혁신에 관련된 연구 및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

제6조(연구원 등) ① 센터에는 각 실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, 연구보조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. (개정 2010.4.6.)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공과대학장과 보건과학대학장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센터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규정 및 세칙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4. 공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3장 공학교육인증

제8조(공학교육인증) 공학교육의 인증을 위한 교과, 수업, 편입학 및 졸업은 공학교육인증목표로 하는 학과의 내규로 정한다.

제9조(이수학점) 공학교육의 인증을 위하여 공학교육인증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학과 내규에서 요구하는 학점은 공학인증원(ABEEK)에서 요구하는 교과영역별 최소 학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교과영역별 최소 이수학점 수는 **다음 각 호와 같다.** (개정 2012.11.16., 2024.7.30.)

1. **삭제** (2024.7.30.)
2. 공학주제 교과목은 **45학점** 이상으로 한다. 단, 설계과정은 **9학점** 이상으로 한다.
3. **삭제** (2024.7.30.)

제10조(인증자격) ①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

야 하고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학습성과 성취기준을 달성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11.16)

② 학생의 인증자격 기준 달성 여부는 학부(학과)또는 전공단위의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판정한다.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부(학과)또는 전공에서 별도로 정한다. (개정 2012.11.16.)

③ **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의 졸업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** (개정 2024.7.30.)

1.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2.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**전공교과에 대하여** 규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.
3.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대상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학습 성과에 관련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4. 졸업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. (항 신설 2012.11.16.)

④ **졸업예정자의 졸업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** (개정 2024.7.30.)

1. 각 프로그램별 운영위원회에서는 졸업예정자의 졸업요건 충족여부를 최종 심의한다.
2. 졸업사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. (항 신설 2012.11.16.)

제11조(전입생) 전입생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. (조 제목 변경 및 개정 2012.11.16.)

제12조(운영세칙) 공학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칙으로 정한다. (개정 2018.5.24.)

제4장 재정 (장 신설 2010.4.6.)

제13조(재원)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교외 연구비와 수탁 연구비
2. 정부 및 대학의 보조금
3. 기타 기부금 및 수입

(조 신설 2010.4.6.)

제14조(회계)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하며,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(조 신설 2010.4.6.)

부칙 (기획예산과-923호, 2008.08.26.)

이 규정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480, 2010.04.06.)

이 규정은 201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1644, 2012.11.16.)

이 규정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851, 2016.12.15.)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(제9조 3호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은 2017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281, 2018.05.24.)

이 규정은 2018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57, 2022.04.20.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1645, 2024.07.30.)

이 규정은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